

	<h2 style="margin: 0;">강의료 지급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7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론강의, 실기강의 및 임상실습 등의 수업을 일반강의라 한다.
2.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3. 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4.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제3조(책임과 권한) ① 강사료 지급업무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강사료 계산
2. 강사료 지급기준액(안) 작성
3. 강사 선정

② 강사료 지급업무의 관련부서는 사무처로 하며 강사료 지급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강의책임시간)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강사, 비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은 『교원복무규정 및 강사임용규정, 비전임강사임용규정』이 정하는 바와 같다.

제5조(강의료의 지급) ① 대학의 강의 중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각각 강의료를 지급한다.

1. 초과강의료는 인정 강의시간 수가 책임시간 수를 초과한 교원에게 지급한다.
 2.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강의를 한 것으로 한다.
- ③ 계절학기 강의료는 수강학생이 5인 이하인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④ 특별강의료, 심사비, 회의비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강의료, 회의비, 심사비 등 지급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강의료의 계산)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.

1.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초과분은 시간단위로 강의료의 50%를 계산한다.
2. 특별강의, 초과강의, 시간강의는 시간단위로 강사료를 계산하며 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	<h2>강의료 지급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7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교무처

제7조(강의료 지급의 특례)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험기간
2. 교내 행사로 인한 수업시간의 변경
3.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

제8조(강의시간의 제한) 강의시간은 『교원복무규정 및 강사임용규정』에 따른다.

제9조(강의료지급 기준액) 매 학년도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.

제10조(강의료 지급기일) 강의료는 당월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. 다만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h2>강의료 지급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7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